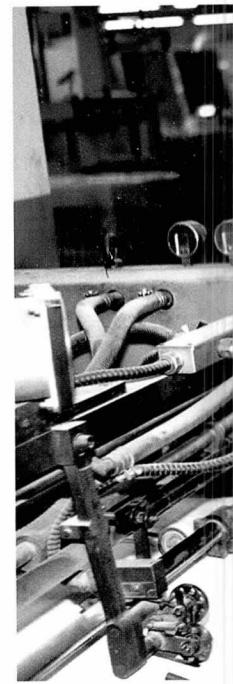


# 정책자금 2조3700억 책정

## 장애인고용 범위 확대

## 고용보험 강화 기업부담 증가



올 한해 지원되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지난해 보다 13.1% 증가한 2조37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늘어나는 중소기업정책과 더불어 진행되는 고용보험대상자 범위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른 의무고용사업장의 확대와 고용장려금 축소, 주5일 근무제 시행 움직임 등은 기업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중기정책자금 13.1% 증가

중소기업정책자금으로 올 한해 지원되는 금액은 지난해 보다 13.1% 증가한 2조3700억원 정도이다. 우선 눈에 띠는 대목은 구조개선자금,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이 구조개선사업자금으로 통폐합되었다는 점이다.

통합된 구조개선자금 중 지난해 구조개선 자금에 해당하던 금액은(1조2천억원) 지난해 보다 10억 원 가량 늘어났으며 업체 당 지원 한도액도 지난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설비가동 운전자금 지원 비중이 지난해보다 10%p 증가한 40% 선까지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장려된다. 아울러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담보 제공 능력을 바탕으로 책정되던 자금별 점수제가 기업별 신용등급제로 전환됐다.

기업별 신용등급제는 기업이 정책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여부보다는 해당 기업의 사업성 및 기술성 등 기업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9조4천억원 정도의 자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이들업체에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이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자금신청에서 최종 대출까지 한번에 이뤄지도록 하는 '원 프로' (One-Process) 대출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자금신청 접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금융기관의 대출 등 그동안 각기 운영됐던 각 단계들이 인터넷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자금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자금신청만 하면 최종 대출까지 연계 처리된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중진공, 보증기관, 금융기관간 상호인증 전산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중기청 소관 정책자금 지원 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

지난해까지 벤처기업 임직원 재임만 가능했던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의 업계진출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 까지 확대되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이외에도 10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국민주택분양 우선 순위 권한이 주어지며, 10년 이상의 군 경력자에게는 전역 1년 전부터 기업이 아닌 군 부담으로 1년 간의 중소기업 연수

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청년 실업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 동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수요에 맞도록 교육훈련을 시켜 이를 채용으로 연결시키는 '청년채용패키지 사업'도 올해 안에 추진된다. 청년 실업문제와 함께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고령자 취업을 돋기 위해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채용





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실시

지난해 논란 끝에 통과된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5년 이상 불법 체류를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8월 17일부터 국내를 떠난 지 1년 이 넘은 시점에 국내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모두들 중소제조업체에서 원하는 숙련근로자들이며, 국내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복귀는 국내 제조업에 불어 닥친 인력난을 다소나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연수생제도와 달리 고용주가 필요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에 꼭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고용안전센터를 통해 1달 이상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을 부담해야 하며, 출국 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반듯이 가입해야 하는 등 산업연수생제도와 비교 기업주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 장애인 고용 의무는 늘고 지원은 축소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도 지난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업체에서 50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이 5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지만 중소기업의 반발을 우려, 이를 어길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은 100인 이상업체에만 부과된다.

또한 새롭게 부담금을 지불하게 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이하 고용업체에 대한 부담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3년간 부과가 유예되며, 부과 후에도 5년 동안은 부담금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채용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상당수 인쇄업체들도 새로이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으로 편입됐다. 새로이 의무고용사업장으로 편입된 인쇄업체의 경우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업체가 대부분 종합인쇄회사이니 만큼 디자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디자인 파트의 경우 상당수 장애인들이 진출해 있으며, 일산직업전문학교, 부산직업전문학교 등 장애인 전문교육 기관에서도 매년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 상시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2%가 넘는 인원과 의무고용사업장이 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고용 장애인의 임금 100%에서 175%까지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 장애인을 고용해 1년 이상 이를 유지할 경우 내년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장애인의 임금 75% 이

하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촉진 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주어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 주5일 근무제 실시

올 7월부터는 공기업, 금융, 보험 및 1,000인 이상 기업에서 주5일 근무제가 전격 실시된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인쇄업체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며,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는 2006년 7월, 50인 이상으로 확대되는 2007년 7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20인 이상으로 확대되는 2008년 7월부터는 상당수 인쇄업체가 대상 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가 인쇄업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업 규모에 따른 실시년도 보다 이른 시일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해당 업체에 실시 시기 이후에 고용한 근로자에 한해 1인당 50만원씩 해당 실시년도가 돌아올 때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주 5일 근무제를 신청한 기업도 근로자 수가 22명에 불과한 중소제조업체였다. 소속 기업 근로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 5일 근무제를 조기에 실시한 이 업체가 올 1월에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무려 2억7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된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확대

고용보험대상 사업장이 5인 이상 상시고용업체에서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가사 서비스업,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한 모든 사업체로 확대된다.

사업주는 피보험자 발생 및 소실 여부를 사실 건수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안전센터에 발생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주가 비용부담 증가를 우려 피보험 자격자 발생 신고를 기피할 경우 피보험 대상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전센터에 피보험 자격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피보험자 발생신고를 돋기 위해 피보험자 발생 신고서식을 대폭 간소화해, '피보험자격증명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합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했다.

〈이용우 기자〉